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<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의 자유무역협정>에 따른 제품 특정원산지 규칙에 관한 공고**세관총서공고 2015년 제64호국무원의 비준을 거쳐, <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의 자유무역협정>은 2015년 12월 20일부터 정식 실시한다. <중화인민공화국 세관<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의 자유무역협정>에 따른 수출입물품 원산지 관리방법>(세관총서령제229호)의 유관규정에 의거, 해당 협정에 따른 제품 특정원산지 규칙(첨부 참고)을 공표하고자 하며, 2015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 해당 첨부문건은 세계세관조직에서 제정한 2012년<상품명칭 및 코드협조제도>를 기초로 한다. 특별히 공고한다. 첨부문건: <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의 자유무역협정>에 따른 제품 특정원산지 규칙.xls<http://www.customs.gov.cn/publish/portal0/tab49564/info781725.htm>　　세관총서2015년 12월 18일  |  |  **关于《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大韩民国政府自由贸易协定》项下产品特定原产地规则的公告**海关总署公告2015年 第64号　　经国务院批准，《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大韩民国政府自由贸易协定》将自2015年12月20日起正式实施。依据《中华人民共和国海关〈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大韩民国政府自由贸易协定〉项下进出口货物原产地管理办法》（海关总署令第229号）有关规定，现将该协定项下产品特定原产地规则（见附件）予以公布，自2015年12月20日起施行。该附件以世界海关组织制定的2012年《商品名称及编码协调制度》为基础。特此公告。附件：《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大韩民国政府自由贸易协定》项下产品特定原产地规则.xls<http://www.customs.gov.cn/publish/portal0/tab49564/info781725.htm>　　　　海关总署　　2015年12月18日  |